

의안번호	2218076
의 퇴 인	구자근의원
회 답 일	2026. 7. 6.
추 계 번 호	26D170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 고
1	안 제14조 (경비의 부담 등)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부담	의무규정
2	안 제14조의2 (건강 보호의 지원) 신설	소방청장 등은 의용소방대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지원, 임무 수행 후 심리적 외상 검사 및 치료지원을 해야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4조 (경비의 부담 등)	미대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집수당, 운영비, 피복비 등을 이미 지원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2	안 제14조의2 (건강 보호의 지원)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의용소방대원 건강 보호 지원(안 제14조의2 신설)

- 개정안은 소방청장 등이 의용소방대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지원, 임무 수행 후 심리적 외상 검사 및 치료지원을 해야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
 -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등으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 및 사망 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소방청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요양보상, 장애보상 등을 목적으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재해보상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령,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시·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건강 보호의 지원으로 건강검진 지원, 심리적 외상 검사 및 치료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재해보상 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예상
-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한 심리적 외상 검사 및 치료지원 등의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 현행법에 따라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을 위하여 가입하고 있는 단체 상해보험료의 개정안에 따른 인상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 참고로, 소방청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전국 의용소방대 규모는 18개 시·도 3,979대, 92,484명이 활동하고 있음
 - 의용소방대 관련 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2025년도의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은 총 813억 600만원이고, 재해보상비 1억 5,400만원, 보상보험 9,600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1] 2025년도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예산액	비중
계	813.06	100.0
소집수당	438.17	53.9
운영비	91.5	11.3
피복비	84.07	10.3
장학금	64.67	8.0
경연대회	38.09	4.7
출장비	29.78	3.7
장비지원	22.68	2.8
국내연수	21.66	2.7
위탁교육	12.18	1.5
국외연수	7.76	1.0
재해보상비	1.54	0.2
보상보험	0.96	0.1

자료: 소방청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